#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9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강일·박상혁·강준현

김남근 · 김성환 · 이연희

한정애 • 박수현 • 김용만

박범계 • 노종면 • 민병덕

복기왕 · 오기형 · 채현일

천준호 • 윤종군 • 박용갑

추미애 의원(19인)

#### 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다만,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나.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 다.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안 제5조의 3신설).
- 라.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의4 신설).
- 마.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 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 바.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 사.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 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영업지역"이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 7. "점포환경개선"이란 대리점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다만,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즉시"를 "체결하기로 한 날부 터 7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9.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한 사항
- 10. 영업지역 및 주변상권 분석에 관한 사항
- 11.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등)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 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거래계약 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상의 상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대리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대리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대리점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의 중요한 영업방침 을 대리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 통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대리점이 대리점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거래계약기간을 포함한전체 대리점거래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행사할 수 있다.
- ③ 공급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급업자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점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대리점거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대리점거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업자나 대리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의4(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제5조의5(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 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 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리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다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단체는 대리점거래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

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2(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시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리점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3(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공급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 을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5조의5에 따른 대리점단체와 시공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의4(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등의 강요 금지) ①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업자는 광고·판촉행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함에 있어 대리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제2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23조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1호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
- 6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

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대리점 설치 행위를 한 자 6의3.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를 한 자

6의4.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에 대한 강요 행위를 한 자 제3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리점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
  - ②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계약의 위반 사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 "영업지역"이란 대리점이 대
	리점거래계약에 따라 상품 또
	는 용역을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u>&lt;신 설&gt;</u>	7. "점포환경개선"이란 대리점
	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
	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제3조(적용제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b>.</b>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	1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	
   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서 신설>

- 2. (생략)
-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 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 나. (생 략)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

한 거래 의존도

라. (생 략)

② (생략)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의무) ① ------

	<u>경우로서 연간</u>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
	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가.•나. (현행과 같음)
<u>&lt;</u>	<u>삭 제&gt;</u>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 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 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u>7일 이전에</u>

- 1. ~ 7. (현행과 같음)
- 8.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 항
- 9.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 한 사항
- 10. 영업지역 및 주변상권 분석 에 관한 사항
- 11.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 임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 품 또는 용역의 명성이나 신 용을 훼손하여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무에 관한 사항
- 12.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등)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 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 리점거래계약의 갱신을 요구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상 의 상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대리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대리점이 수락하지 아 니한 경우
- 3. 대리점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대리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 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유통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대리점이 대리점

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거래계약기간을 포 함한 전체 대리점거래계약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급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급업자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점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 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 나 대리점거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 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 만료 전의 대리점거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 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업자나 대리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4(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 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급업자의 대리점

<u><신 설></u>

<u>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u> 없다.

제5조의5(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 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대리점단체가 협의 를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다 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 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 하여 대리점단체는 대리점거래 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

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 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 공급업자는 계약 체 결 시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 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 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리 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영업 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방식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대 리점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점포 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 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시 공자를 선정하거나 제5조의5에 따른 대리점단체와 시공자에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 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 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 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한다.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부당한 광고·판촉행 사 등의 강요 금지) ① 공급업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 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 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업자는 광고·판촉행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함에 있어 대리점이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행위의 유형·기준 및 제2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

\_\_\_\_\_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 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u>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23조(시정조치)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
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제25조(과징금) ①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
<u>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2) (현행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 8. (생략)

② · ③ (생 략)

<u>제33조(고발) ① 제30조제1항의</u> <u><삭 제></u>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_\_\_\_\_

-----.

- 1.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하거나 부당하게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
- 2. ~ <u>6.</u> (현행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 6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 점이나 대리점 설치 행위를 한 자
- 6의3.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를 한 자
- 6의4.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 판촉행사 또는 다른 사업자 와의 제휴에 대한 강요 행위를 한 자
-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
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 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 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 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 지 못한다.